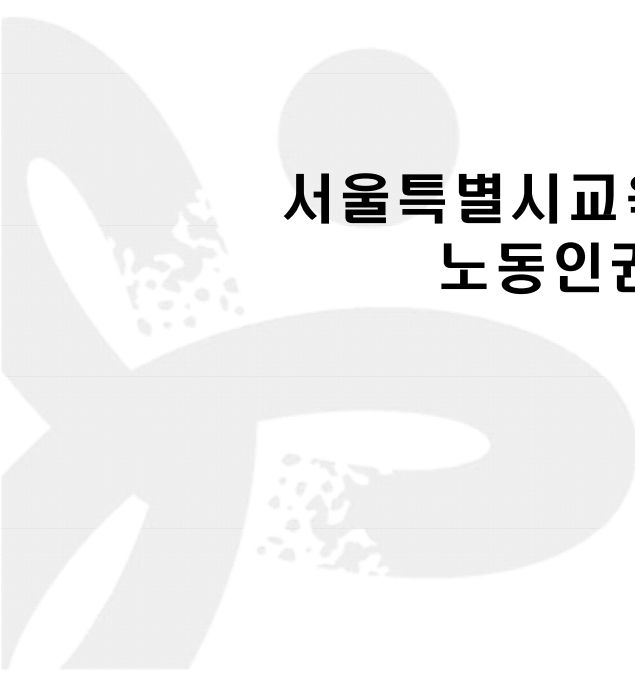


---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

2017. 03.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TF



# 목 차



<b>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개요</b>	<b>1</b>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요 및 목적	1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컨설팅 추진 경과	3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TF 업무협의회 경과	6
<b>I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설문조사 결과</b>	<b>8</b>
1. 조사의 목적	8
2. 조사내용 및 방법	8
3. 조사 응답자 현황	9
4. 조사결과	9
5. 소결	25
<b>II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 및 문제점</b>	<b>26</b>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점	26
2. 산업체 운영 실태 및 문제점	31
3.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및 문제점	33
<b>IV.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선방안</b>	<b>36</b>
1. ‘지위·노동조건 등 훈련계약에 대한 불명확함’ 개선방안	36
2. ‘노동인권 및 학생선택권 보장에 대한 미흡한 인식’ 개선방안	38
3. ‘현장교육훈련 질 관리 미흡’ 개선방안	40
4. ‘불충분한 행정적·제도적 뒷받침’ 개선방안	41
5.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개선방안	43
<b>V. 총괄결론</b>	<b>45</b>
1. 도제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45
2. 학생 노동인권의 문제점	46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선방안	46

#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 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개요

###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요 및 목적

#### 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요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학습병행제 관련 정책사업 중 하나로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주무부처로 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지정하여 운영 중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현장실무를 배우는 한국형 도제교육 모델로서 해당사업에 선정된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2학년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함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와 기업, 지역산업계가 협업을 통해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함께 운영하는(학교 : 이론 및 기초실습, 기업 : 심화실습)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함

#### 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추진 목적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추진하고 있음

-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 창출
- 학생은 졸업 후 구직기간 단축 및 취업 후 직무 만족도와 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 기업은 우수한 기술·기능인력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국가적으로는 핵심 분야 산업인력 확충 및 청년고용률 제고

#### 다. 서울지역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현황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15. 10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이하 도제학교)’ 16개소

(51개 고교, 613개 기업)을 선정 발표하였으며, 2016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관할에서는 2개 사업단, 10개 고교, 103개 기업, 257명의 학생이 도제학교에 참여하였음

[표 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서울지역 선정 현황(2016년)

시·도	사업단(대표학교)	참여학교	분야	기업수	학생수
계	2	10	-	103	257
서울	성동공업고	5개교(성동공업고, 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절삭가공	63	130
	용산공업고	5개교(용산공업고, 서울전자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산업용전자기기 개발	40	127

○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참여기업과 ‘(표준)훈련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며, ‘일간정시제’, ‘주간정시제’, ‘구간정시제’ 등 다양한 형태로 일과 학습을 병행하고 있음(서울지역 사업단의 경우 2016년 기준 구간정시제로 운영)

- ▶(일간정시제) 하루 중 오전에는 학교, 오후에는 도제교육센터 또는 기업
- ▶(주간정시제) 1주일 중 1~2일은 학교, 3~4일은 도제교육센터 또는 기업
- ▶(구간정시제) 1학기 중 1주~2개월은 학교, 1주~2개월은 기업 또는 도제교육센터

<출처 : 교육부·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2016년도에는 5개사업단(단일사업단 포함) 16개교가 추가로 선정되어 2017년부터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특성화고 총 26개교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될 예정임

[표 2] 2017학년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정 현황(2017년 현재)

유형	사업단 (거점학교)	참여학교	분야	선정연도
	7	26		
거점	성동공고	5개교(성동공고, 서울아이티고, 영등포공고, 인덕공고, 한양공고)	절삭가공	2015
거점	용산공고	5개교(용산공고, 서울전자고, 성수공고, 세명컴퓨터고, 광운전자고)	산업용전자기기 개발	2015
거점	신진자동차고	4개교(신진자동차고, 성수공고, 인덕공고, 휘경공고)	자동차	2016

거점	동일여상	4개교(동일여상, 서울컨벤션고, 서일국제경영고, 신정여상)	식음료	2016
거점	세명컴퓨터고	4개교(세명컴퓨터고, 서울디지텍고, 상일미디어고, 한양공고)	SW개발	2016
거점	휘경공고	3개교(휘경공고, 광운전자공고, 한양공고)	전기전자	2016
단일	서울공고	1개교(서울공고)	뿌리기술	2016

**라. 도제학교 참여기업 선정(고용노동부·산업인력관리공단 ‘일학습병행제 운영매뉴얼’, 2016. 07. 참조)**

-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 신청 단계에서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이상(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 이상 기업)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서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 의지가 높아야 함
- 참여기업은 일학습병행제 프로그램 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담당자 지정, 최소 6개월 이상 훈련 실시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최소한의 규모 제한이 필요
- 다만, 월드클래스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관계부처 전담기관, 지역인자위 추천기업,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기업군(일학습병행제 특화업종(특구)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가능
- 신청 기업은 기업현장교사 및 훈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안정적으로 장기훈련이 가능한 경영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2.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컨설팅 추진 경과**

**가. 개요**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8조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 2012.1.26.)
- 「특성화고 현장실습 관련 학생안전 및 노동인권보호 강화 방안(안)」 (진로직업교육과-8995, 2016.7.8.)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 컨설팅 계획(안)」 (민주시민교육과-9582, 2016.8.4.)

○ 목적

- 통상 3학년 2학기 실시되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에 비교하여 고등학교 2학년 1학기부터 참여하는 도제학교의 특성상 참여 학생들에 대하여 우선적인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보호가 필요
-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참여기업 현황 점검 등 관련 전문가 컨설팅을 통하여 학교와 현장에서 노동인권 친화적인 도제식 직업교육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함

○ 노동인권교육 및 노동인권컨설팅 TF 구성(2016. 8. 8.)

- 권혁태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비전)
- 김성호 (공인노무사, 성동근로자복지센터)
- 박공식 (공인노무사, 이팝노동법률사무소)
- 이수정 (공인노무사,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인권교육소위원장)
- 최진혁 (공인노무사, 서울노동권익센터)
- 전명훈 (노동인권전문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대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0개교 도제반(2학년) 학생 242명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내용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 2학년 학생들의 산업안전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하여 공인노무사를 통한 노동인권 교육 실시

[표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교육 진행 일정

학교명	설립별	교육일정	담당 TF위원	보조강사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사립	2016. 10. 6.(목) 16:30-18:30	박공식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최진혁 노무사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사립	2016. 10. 18.(화) 15:00-17:00	최진혁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이미선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전자고등학교	공립	2016. 10. 6.(목) 10:30-12:20	김성호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한지현 팀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성동공업고등학교	공립	2016. 10. 19.(수) 14:30-16:20	박공식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성수공업고등학교	공립	2016. 12. 26.(월) 10:40-12:30	김성호 노무사	한지현 팀장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사립	2016. 10. 4.(화) 13:30-15:20	권혁태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임진희 사무국장 (평등사회노동위원회)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사립	2016. 10. 5.(수) 13:10-15:10	권혁태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임진희 사무국장 (평등사회노동위원회)
용산공업고등학교	공립	2016. 10. 11.(화) 10:00-12:00	이수정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인덕공업고등학교	사립	2016. 10. 21.(금) 14:00-16:00	최진혁 노무사	박유림 (서울노동권익센터)
한양공업고등학교	사립	2016. 10. 6.(목) 13:30-15:20	이수정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최진혁 노무사

○ 교육진행 결과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총 10개교, 10학급, 약 242명 대상 노동인권교육 완료
- 교육진행과 함께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기본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진행

다. 노동인권 컨설팅

○ 노동인권 컨설팅 대상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도제부장, 담당교사, 행정사 등

○ 노동인권 컨설팅 내용

-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이 체결한 (표준)훈련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현황 파악
-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담당하고 있는 도제교육과정 운영 참여 기업 현황 파악(진로직업교육과 및 도제학교 참여 학교 협조)
- 도제학교 참여학교에 대한 노동인권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노동인권 친화적인 도제 교육 시스템 지원

[표 4]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진행 일정

학교명	설립별	학교 담당자	컨설팅 일정	담당 TF위원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사립	이기준	2016.11.22.(화) 10:00~11:00	박공식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서울아이티고등학교	사립	임강민	2016.11.29.(화) 09:00~10:00	최진혁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서울전자고등학교	공립	오병구	2016.11.15.(화) 10:30~11:30	김성호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성동공업고등학교	공립	고현진	2016.11.18.(금) 15:30~16:30	박공식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성수공업고등학교	공립	정하준	2016.11.14.(월) 10:00~11:00	김성호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세명컴퓨터고등학교	사립	정힘찬	2016.11.18.(금) 10:00~11:00	권혁태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사립	이광욱	2016.11.30.(수) 14:00~15:00	권혁태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용산공업고등학교	공립	신수정	2016.11.15.(화) 14:00~15:00	이수정노무사 전명훈전문관
인덕공업고등학교	사립	최우석	2016.11.23.(수) 10:00~11:00	최진혁노무사 전명훈전문관
한양공업고등학교	사립	허수학	2016.11.29.(화) 14:00~15:00	이수정노무사 전명훈전문관

○ 노동인권 컨설팅 진행시 아래 서류를 학교로부터 제출받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체크리스트’ (별첨)를 중심으로 컨설팅 진행

[제출서류]

- ① 도제학교 참여기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 ② 도제반 노동인권교육 시행 계획서(시행하였을 경우)
- ③ 도제반 노동인권교육 교육자료(시행하였을 경우)

###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TF 업무협의회 경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기 위해 2016. 8월부터 12월까지 총 6차례의 TF 업무협의회와 2차례 결과보고서 검토 회의를 진행함

#### ○ 1차 협의회

- 일시 : 2016. 8. 30.(화) 10:00~12:0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본관 201호
- 참석 :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전명훈 전문관
- 안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교육 및 노동인권 컨설팅 계획 보고 및 검토 등



○ 2차 협의회

- 일시 : 2016. 9. 9.(금) 17:00~19:0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 참석 : 전명훈 전문관, 권혁태, 이수정, 김성호, 박공식,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교육 설문문항 검토 및 논의 등

○ 3차 협의회

- 일시 : 2016. 9. 29.(목) 10:30~12:00
- 장소 : 카페 봄봄(영등포)
- 참석 : 전명훈 전문관,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전체 교육 진행안 검토 등

○ 4차 협의회

- 일시 : 2016. 10. 24.(월) 10:30~12:30
- 장소 : 카페 봄봄(영등포)
- 참석 : 전명훈 전문관,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교육 결과 검토 및 논의 등

○ 5차 협의회

- 일시 : 2016. 11. 8.(화) 11:00~14:00
- 장소 : 카페 봄봄(영등포)
- 참석 : 전명훈 전문관,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체크리스트 및 일정 검토 등

○ 6차 협의회

- 일시 : 2016. 12. 6.(화) 10:00~13:00
- 장소 : 카페 봄봄(영등포)
- 참석 : 전명훈 전문관,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진행 평가 등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결과보고서 초안 검토협의회

- 일시 : 2016. 12. 21.(수) 10:00~13:00

- 장소 : 서울시교육청 본관 905호

- 참석 : 전명훈 전문관(민주시민교육과), 김용국 장학사(진로직업교육과),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결과보고서 초안 검토 및 수정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결과보고서 수정본 검토협의회

- 일시 : 2017. 1. 16.(월) 16:00~18:00

- 장소 : 영등포 카페 봄봄

- 참석 : 전명훈 전문관(민주시민교육과), 권혁태, 김성호, 박공식, 이수정, 최진혁 노무사

- 안건 : 도제학교 노동인권 컨설팅 결과보고서 수정본 검토 등

## II.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설문조사 결과

### 1. 조사의 목적

2015년부터 시작되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와 관련하여 노동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노동인권 친화적이고 안전한 도제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2. 조사 내용 및 방법

○ 본 조사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의 노동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제학교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도제학교 참여 계기

- 도제학교 운영 관련
- 도제학교 사업체 개요
- 도제학교에서 일하는 환경 및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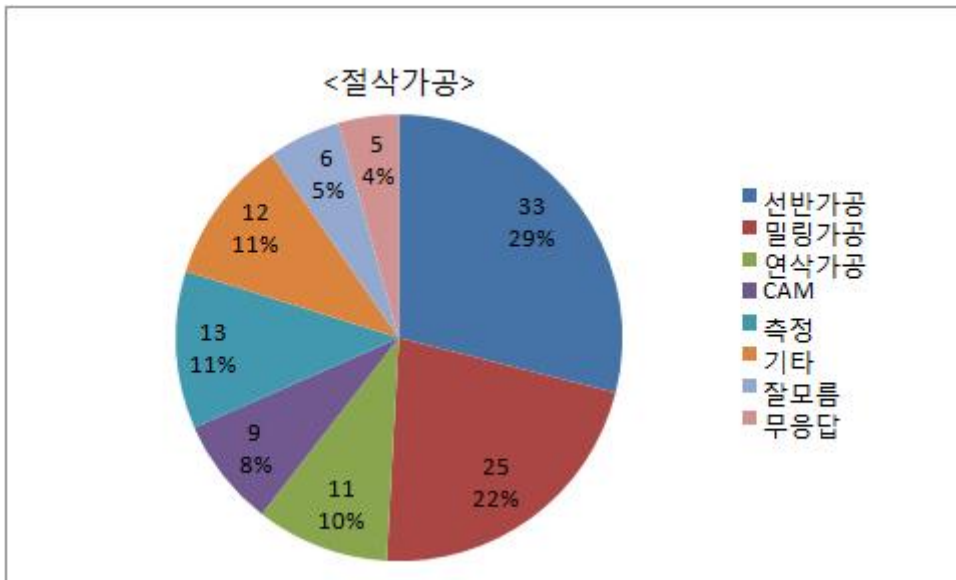
### 3. 조사 응답자 현황

○ 서울시 관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자 10개교 160명

### 4. 조사결과

가. 참여 중인 도제분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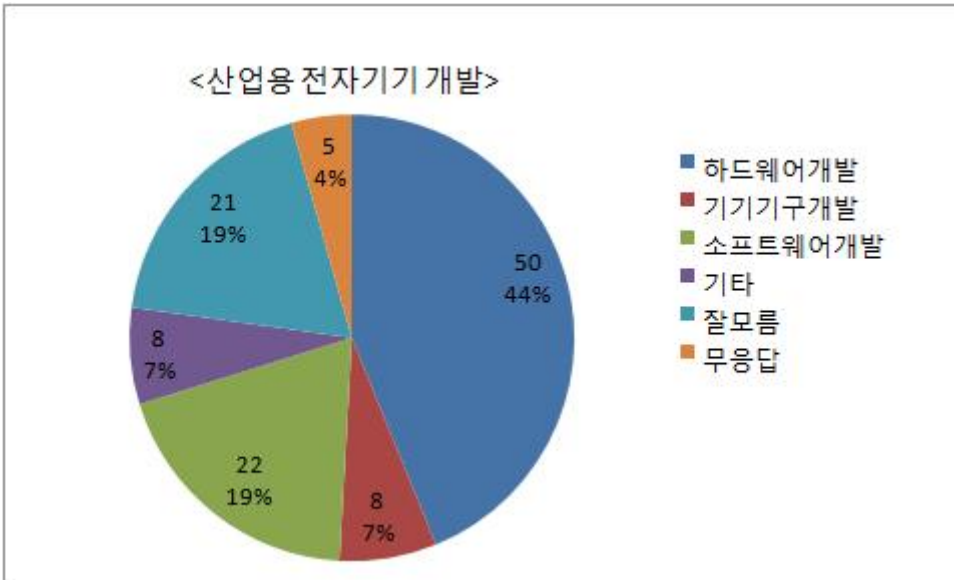
[그림 1] 참여 중인 도제분야(절삭가공)



[표 5] 참여 중인 도제분야(절삭가공)

세부 분야	응답수	비율
선반가공	33	28.9%
밀링가공	25	21.9%
연삭가공	11	9.6%
CAM	9	7.9%
측정	13	11.4%
기타	12	10.5%
잘모름	6	5.3%
무응답	5	4.4%
합계	114	100.0%

[그림 2] 참여 중인 도제분야(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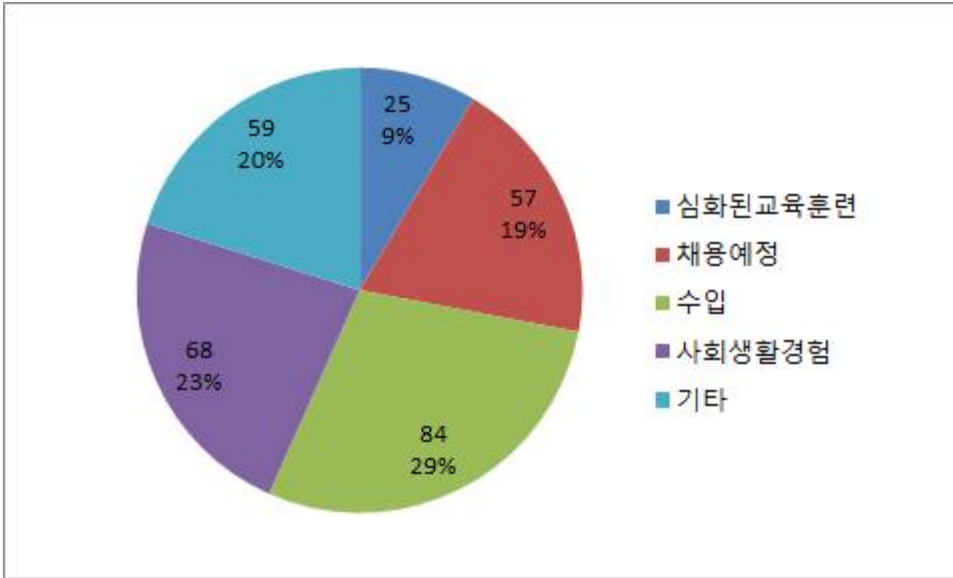
[표 6] 참여 중인 도제분야(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세부 분야	응답수	비율
하드웨어개발	50	43.9%
기기기구개발	8	7.0%
소프트웨어개발	22	19.3%
기타	8	7.0%
잘모름	21	18.4%
무응답	5	4.4%
합계	114	100.0%

- 서울시 관내 도제학교의 경우 크게 절삭가공분야와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분야로 분류되어 있음
- 각각의 세부분야 대해 질문한 결과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답하고 있으나 잘 모른다는 응답도 각각 5.3%, 18.4%로 적지 않았음
- 기타응답은 절삭가공분야의 경우 절단, 머시닝센터, 조립, 자동차핸들조향장치, 금형, 방전가공기, 레이저가공, 용접, 특수용접, 반도체 등의 응답이,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분야의 경우 PCB개발, 반도체개발, 펌웨어개발, 전기, CAD 등의 응답이 나왔음

나. 도제학교 참여 동기 (중복응답)

[그림 3] 도제학교 참여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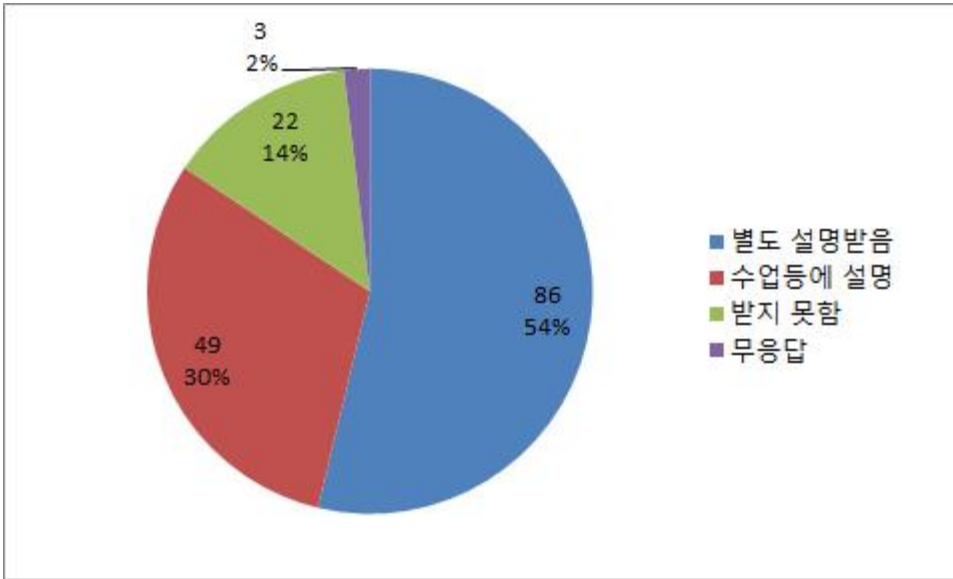
[표 7] 도제학교 참여 동기

참여 동기	응답수	비율
심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싶어서	25	8.5%
나중에 채용이 예정된다고 하여	57	19.5%
교육을 받으면서 수입도 생겨서	84	28.7%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서	68	23.2%
기타	59	20.1%
합계	293	100.0%

- 도제학교 참여 동기에 대한 질문에 전체 28.7%가 ‘교육을 받으면서 수입도 생겨서’, 23.2%가 ‘사회생활을 먼저 경험하고 싶어서’ 라고 응답했음
- 전체적으로 도제학교의 본 취지라고 볼 수 있는 심화된 교육이나 채용예정에 대한 동기보다 수입이나 사회생활 경험처럼 부수적 취지에 대한 참여 동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
- 기타 답변으로는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라는 응답이 있었음

다. 도제학교 신청 전 사전 안내

[그림 4] 도제학교 신청 전 사전 안내(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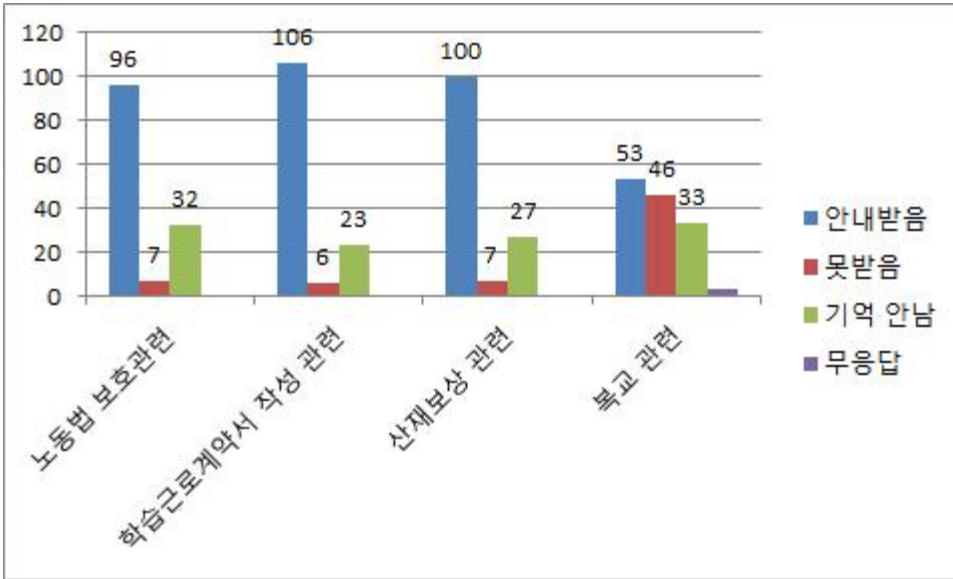
[표 8] 도제학교 신청 전 사전 안내(교육)

안내 여부	응답수	비율
네, 따로 안내(교육)시간이 있었습니다.	86	53.8%
일반 수업시간이나 상담시간에 잠시 안내(교육)을 받았습니다.	49	30.6%
안내(교육) 받지 못하였습니다.	22	13.8%
무응답	3	1.9%
합계	160	100.0%

○ 도제반에 신청하기 전에 학교에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일학습병행제-도제제도)” 관련하여 따로 시간을 마련해 안내(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냐는 질문에 53.8%는 별도의 안내(교육)시간이 있었다고 답한 반면 일반 수업시간이나 상담시간에 잠시 안내(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30.6%, 안내(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3.8%로 절반 가까이의 학생이 충분한 안내(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라. 도제학교 사전안내 내용

[그림 5] 도제학교 사전안내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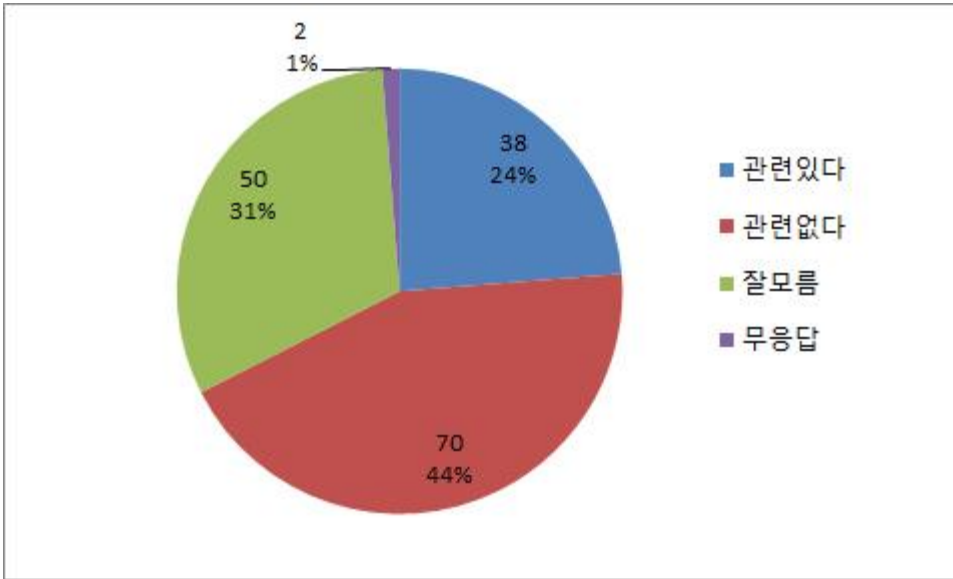
[표 9] 도제학교 사전안내 내용

구 분	노동법 보호관련		학습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산재보상 관련		복교 관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안내받음	96	71.1%	106	78.5%	100	74.1%	53	39.3%
못받음	7	5.2%	6	4.4%	7	5.2%	46	34.1%
기억 안남	32	23.7%	23	17.0%	27	20.0%	33	24.4%
무응답	0	0.0%	0	0.0%	1	0.7%	3	2.2%
합계	135	100.0%	135	100.0%	135	100.0%	135	100.0%

○ 도제반 사전 안내(교육)를 받은 경우 그 내용에 대한 질문에 ‘노동법 보호관련’ (71.1%), ‘학습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78.5%), ‘산재보상 관련’ (74.1%)에 대한 응답은 70%대인 반면 도제학습 중 중단 등의 경우에 대한 복교조치와 관련해 안내받았다는 응답은 39.3%로 나타났음

바. 공동실습장에서의 교육내용과 사업체에서의 OJT 연관성

[그림 6] 공동실습장에서의 교육내용과 사업체에서의 OJT 연관성



[표 10] 공동실습장에서의 교육내용과 사업체에서의 OJT 연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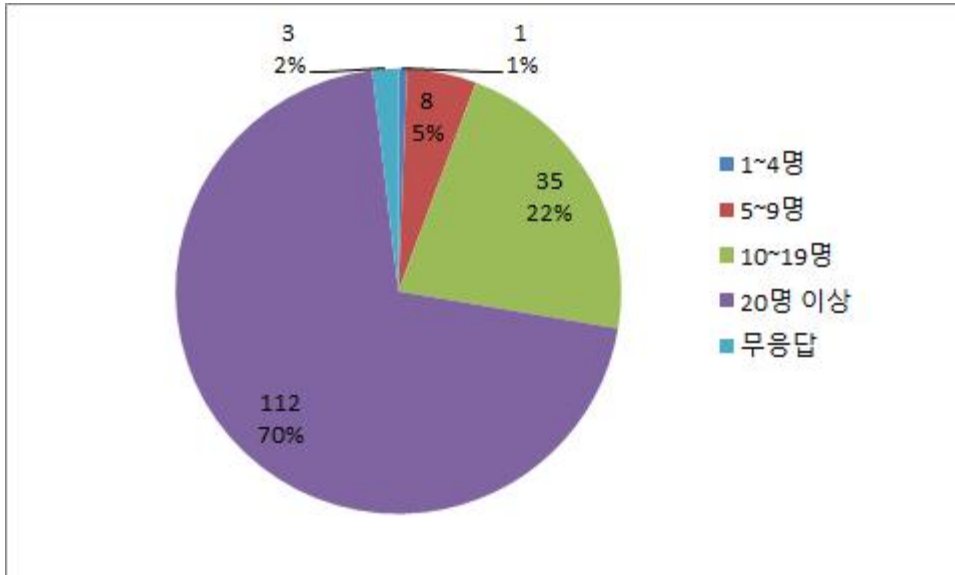
응답내용	응답수	비율
관련있다	38	23.8%
관련없다	70	43.8%
잘모름	50	31.3%
무응답	2	1.3%
합계	160	100.0%

○ 공동실습장에서의 교육내용과 기업현장 OJT의 관련 정도에 대해 관련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23.8%, 관련 없다는 응답은 43.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로 대체로 공동실습장의 교육내용과 관련 정도가 떨어진다고 응답하였음



바. 도제학교 참여 사업체 규모

[그림 7] 도제학교 참여 사업체 규모



[표 11] 도제학교 참여 사업체 규모

사업체 규모	응답수	비율
1~4명	1	0.6%
5~9명	8	5.0%
10~19명	35	22.0%
20명 이상	112	70.4%
무응답	3	1.9%
합계	159	100.0%

○ 도제학교 사업체 규모에 대한 질문에 상시노동자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이 70.4%, 10~19명이라는 응답이 22.0%, 10인이 안 된다는 응답이 5.6%로 나타났다

사.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내용

[표 12]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내용 (산업용 전자기기 개발 분야)

- 기계 조작, 프로그램 전산, 조립, 생산업무
- 펌웨어 개발, CAD, PCB 설계, 아두이노, 납땜, 납 자르기, 아트웍
- 판넬 가공, 수배전반, 분전반, 배전반 등 제작, 기계배선
- 반도체 SAW, 세척(몬산토), 면취, 웨이퍼 측정, 2차 가공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검사, 프로그램 다운로드, 부품 업그레이드, 서버 제작
- 불량 확인, 수리
- 판금의장보조
- 전화상담, 플로어매니저, 재고 확인, 소프트웨어 문제 안내, 백업 안내, 사무업무
- 교육, 장비 설명
- 기자재 관리 및 정리
- 박스작업, 택배소포관리, 청소, 단순노동, 잡일

[표 13]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내용 (절삭가공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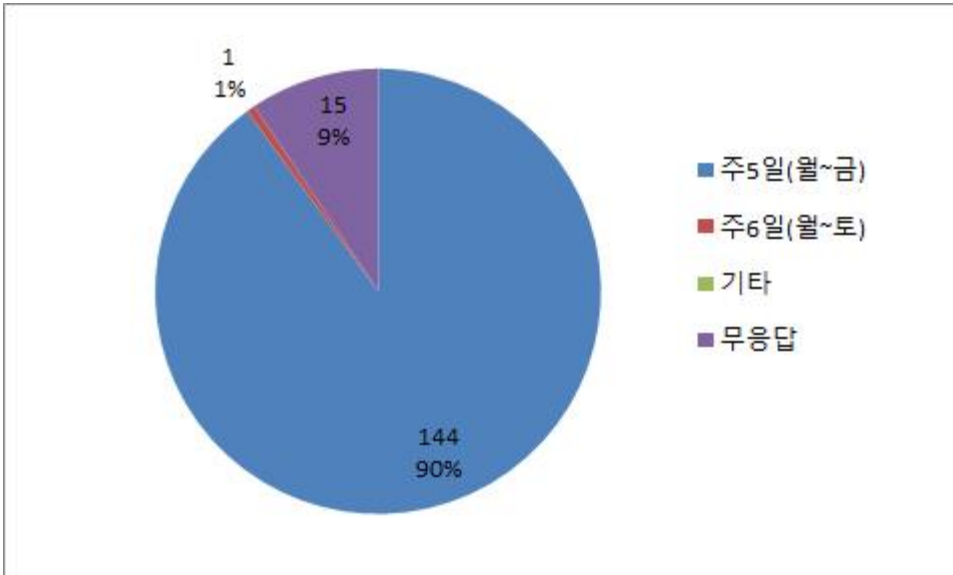
- 밀링, CNC선반, 버튼맨, 캐드, 머시닝센터 가공, 롤버닝, 와이어, 드릴링 머신, 레스팅, 방전, 연마, 기계세척
- 칩 교육, 기계분야 수업, 용접 연습
- 측정, 조립, 가공, 육안검사, 불량검사
- 고철 나르기, 공작물 운반
- 청소, 포장, 제품운반, 부직포 뜯기, 잡일, 잘 모름

○ 도제학교 사업장 OJT의 업무내용에 대한 질문에 분야별로 관련된 업무를 하였다는 응답과 더불어 청소, 잡일, 소포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는 응답이 함께 있었음

○ 응답 중 NCS기반 교육과 무관한 업무관련성이 적은 업무를 하였거나, 부수적인 업무라 하더라도 그 취지나 연관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아.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요일

[그림 8]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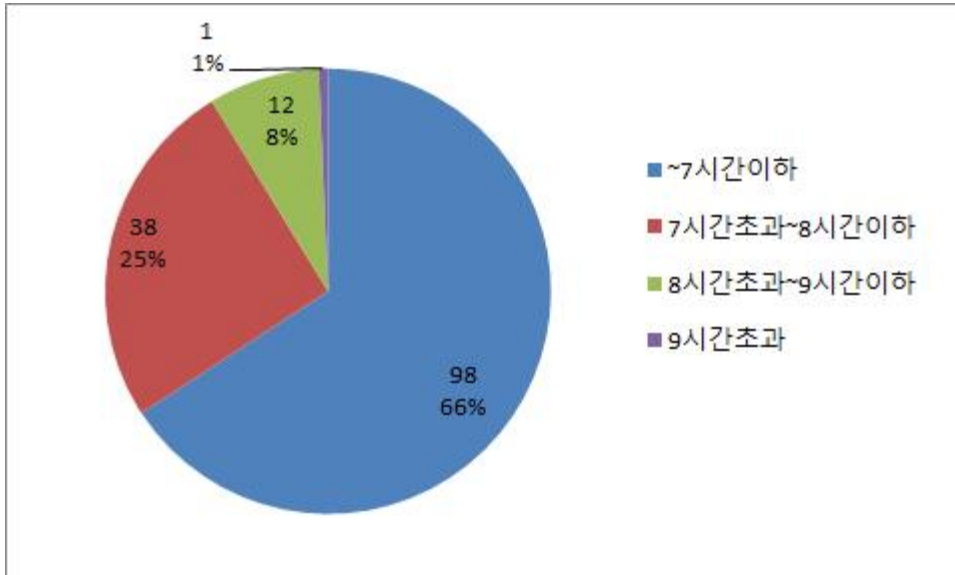
[표 14]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요일

업무 요일	응답수	비율
주5일(월~금)	144	90.0%
주6일(월~토)	1	0.6%
기타	0	0.0%
무응답	15	9.4%
합계	160	100.0%

○ 업무요일은 90%가 월요일~금요일이었으며, 1곳이 토요일까지 근무한다고 응답하였음

자.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시간

[그림 9]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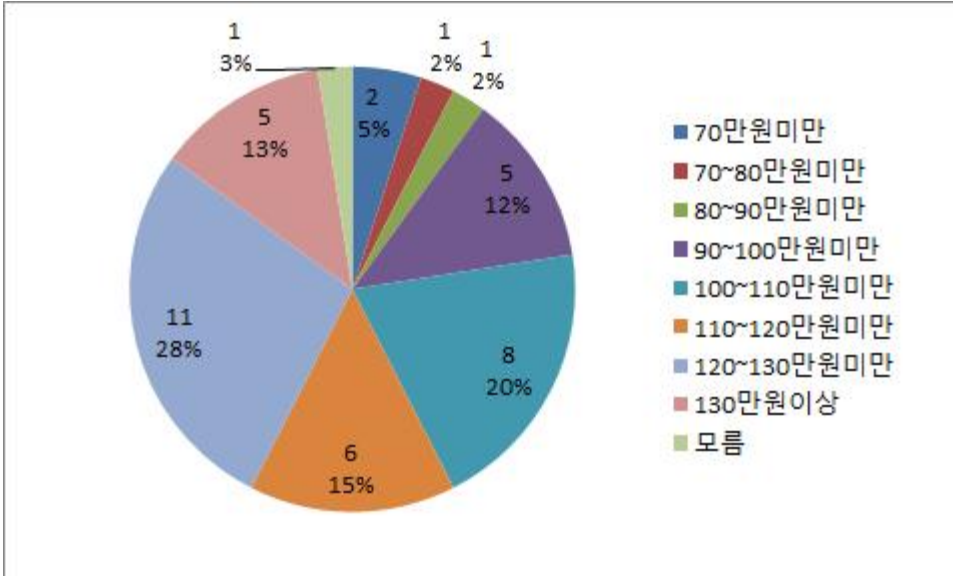
[표 15] 도제학교 사업장 OJT 업무 시간

업무 시간	응답수	비율
~7시간이하	98	65.8%
7시간초과~8시간이하	38	25.5%
8시간초과~9시간이하	12	8.1%
9시간초과	1	0.7%
합계	149	100.0%

○ 업무시간은 7시간 이하인 경우가 65.8%였고, 7시간 초과~8시간 이하의 경우가 25.5%였음. 한편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8.9%로 훈련근로계약서 위반의 소지가 있는 상태임

차. 도제학교 사업장 OJT 급여

[그림 10] 도제학교 사업장 OJT 급여(월급,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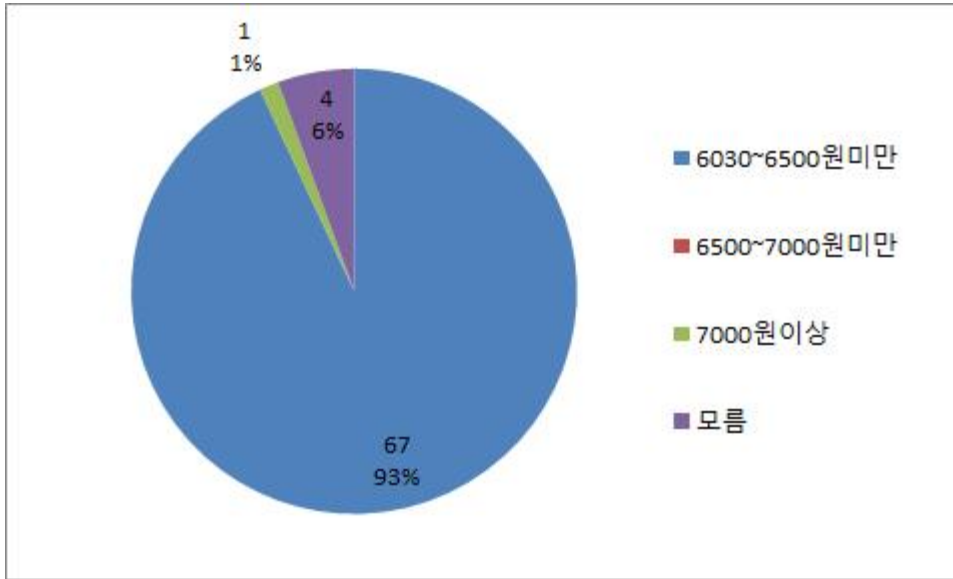
[표 16] 도제학교 사업장 OJT 급여(월급)

급여액	응답수	비율
70만원미만	2	1.4%
70~80만원미만	1	0.7%
80~90만원미만	1	0.7%
90~100만원미만	5	3.4%
100~110만원미만	8	5.4%
110~120만원미만	6	4.1%
120~130만원미만	11	7.4%
130만원이상	5	3.4%
모름	1	0.7%
무응답	108	73.0%
합계	148	100.0%

○ 임금을 월급으로 응답한 경우,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라고 응답하였음. 월급여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업별 지불여력, 월급 지급시기로 인한 분할 지급, 임금항목의 차이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함

○ 설문 참여자 중 73.0%가 응답을 하지 않아 본인들의 근로조건을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 채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그림 11] 도제학교 사업장 OJT 급여(시급, 응답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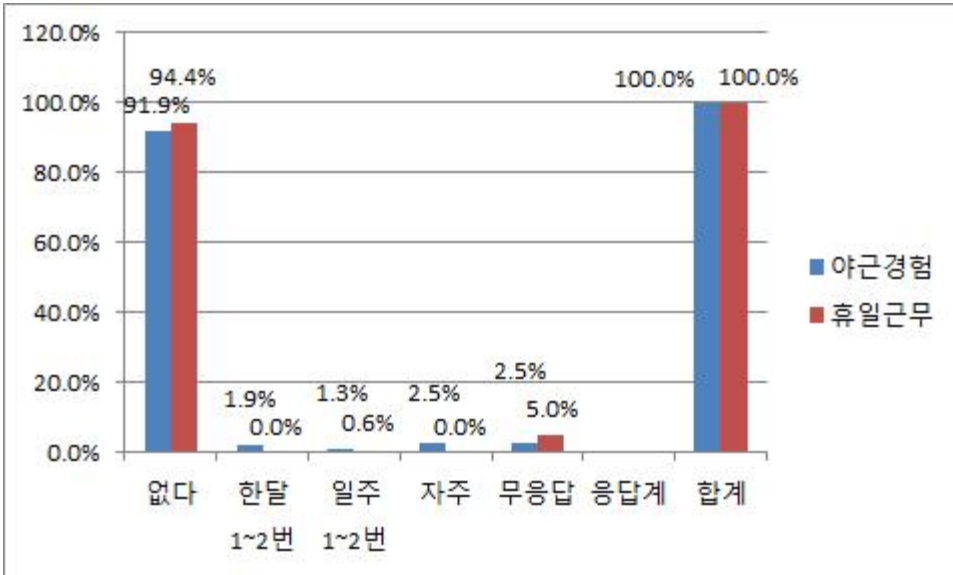
[표 17] 도제학교 사업장 OJT 급여(시급)

급여액	응답수	비율
6030원미만	0	0.0%
6030~6500원미만	67	56.3%
6500~7000원미만	0	0.0%
7000원이상	1	0.8%
모름	4	3.4%
무응답	47	39.5%
합계	119	100.0%

- 시급으로 응답한 경우는 무응답자를 제외한 응답자 기준으로 93%가 최저임금 수준 이었고, 응답자의 6%만이 7천원 이상이었습니다.
- 설문 참여자 중 월급여 질문은 73.0%가, 시급 질문은 39.5%가 응답을 하지 않아 업무 시 근로조건에 대한 명확한 사전 설명과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카. 도제학교 사업장 OJT 야간 및 휴일근무 경험

[그림 12] 도제학교 사업장 OJT 야간 및 휴일근무 경험



[표 18] 도제학교 사업장 OJT 야간 및 휴일근무 경험

	야근경험		휴일근무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없다	147	91.9%	151	94.4%
한달 1~2번	3	1.9%	0	0.0%
일주 1~2번	2	1.3%	1	0.6%
자주	4	2.5%	0	0.0%
무응답	4	2.5%	8	5.0%
합계	160	100.0%	16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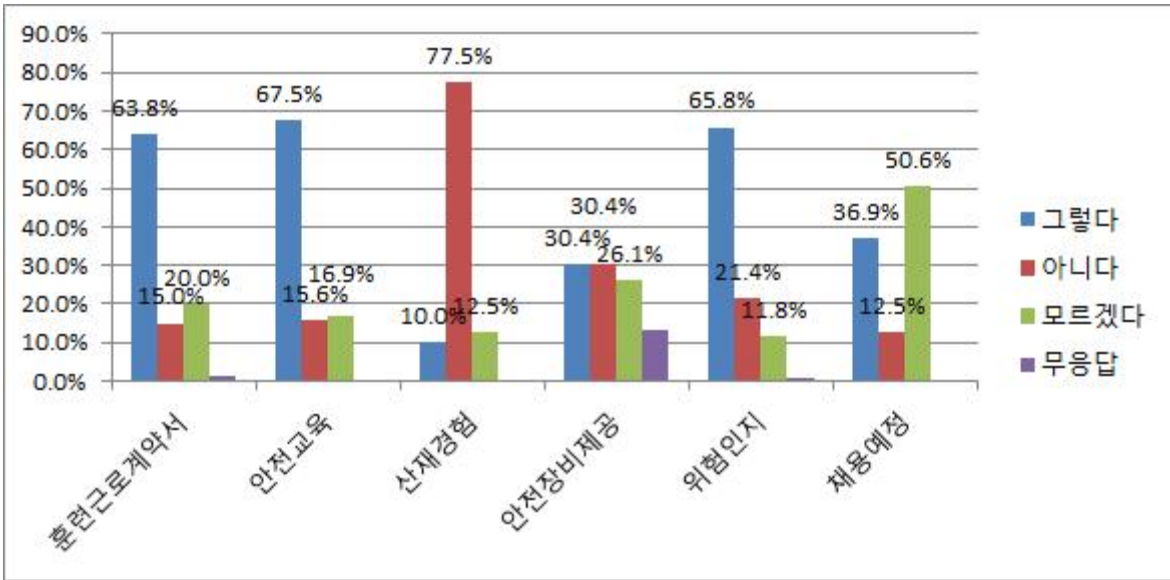
○ 야간 및 휴일근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각각 91.9%, 94.4%가 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일부 야간근무의(5.7%), 휴일근무(0.6%)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타.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

문항	그렇다	아니다	모르겠다.
1) <u>훈련근로계약서</u> 를 작성하고 한부씩 나눠가졌다.	①	②	③
2) 회사에서 <u>안전교육</u> 을 받았다.	①	②	③
3) 회사에서 일하다가 <u>다친 적이 있다</u> .(친구가 그랬다.)	①	②	③
↳ 3-1) 일하다 다친 경우 <u>산재보상</u> 을 받았다.	①	②	③

4) 회사에서 <b>안전장비</b> 를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장비 : )	①	②	③
5) 일하다 <b>“다칠 수도 있겠다”</b> 라고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6) 지금 다니는 회사에 <b>채용 예정</b> 이다.	①	②	③

[그림 13]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



[표 19]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

	훈련근로 계약서		안전교육		산재경험		안전장비제공		위험인지		채용예정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Count	Percentage
그렇다	102	63.8%	108	67.5%	16	10.0%	123	30.4%	76	65.8%	59	36.9%
아니다	24	15.0%	25	15.6%	124	77.5%	40	30.4%	69	21.4%	20	12.5%
모르겠다	32	20.0%	27	16.9%	20	12.5%	22	26.1%	14	11.8%	81	50.6%
무응답	2	1.3%	0	0.0%	0	0.0%	2	13.0%	1	1.1%	0	0.0%
합계	160	100.0%	160	100.0%	160	100.0%	187	100.0%	160	100.0%	160	100.0%

○ 회사에서 일하는 환경에 대한 질문에 설문 당시 훈련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경우는 35.0%,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5%, 산재를 경험하거나 함께 일하던 친구가 산재를 겪은 경우는 10.0%,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고 느낀 비율은 65.8%, 안전장비를 제공받은 비율은 30.4%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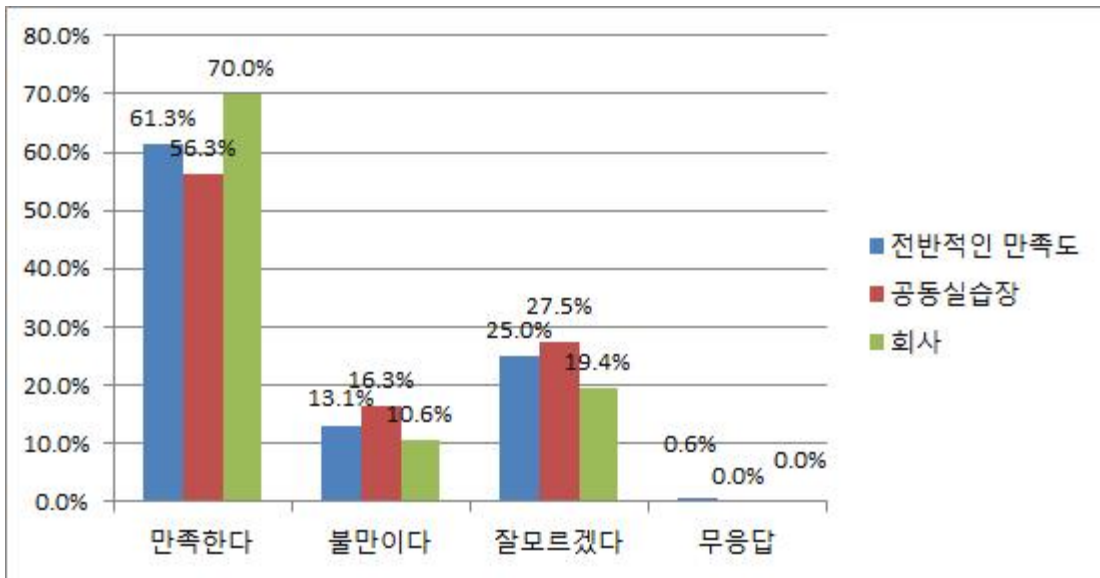
○ 2015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산재비율이 0.5%인 것과 비교하면 도제학교의 산재비율은 20배인 10%였음. 교육 중 면담 결과 작은 사고의 경우 산재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음



○ 일하다 다칠 수도 있겠다는 비율이 6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안전장비가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목)장갑(8), 작업복(근무복)(7) 등 안전장비로 분류되지 않는 단순 작업도구를 지급한 경우가 다수였고, 안전장비로 분류되는 작업화(안전화)(4), (방진)마스크(4), 귀마개(4), 안전모(2), 보안면(1), 용접캡(1) 등을 제공받은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과. 도제훈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그림 14] 도제훈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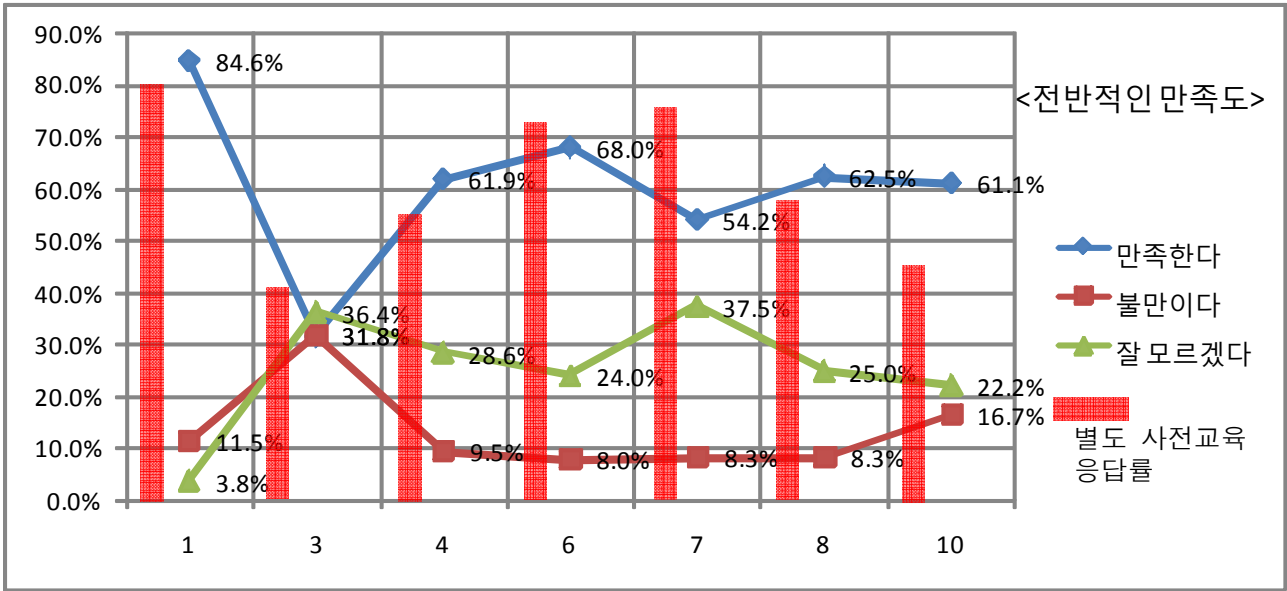


[표 20] 도제훈련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만족응답	전반적인 만족도	공동실습장	회사
만족한다	61.3%	56.3%	70.0%
불만이다	13.1%	16.3%	10.6%
잘모르겠다	25.0%	27.5%	19.4%
무응답	0.6%	0.0%	0.0%
응답계	0.0%	0.0%	0.0%
합계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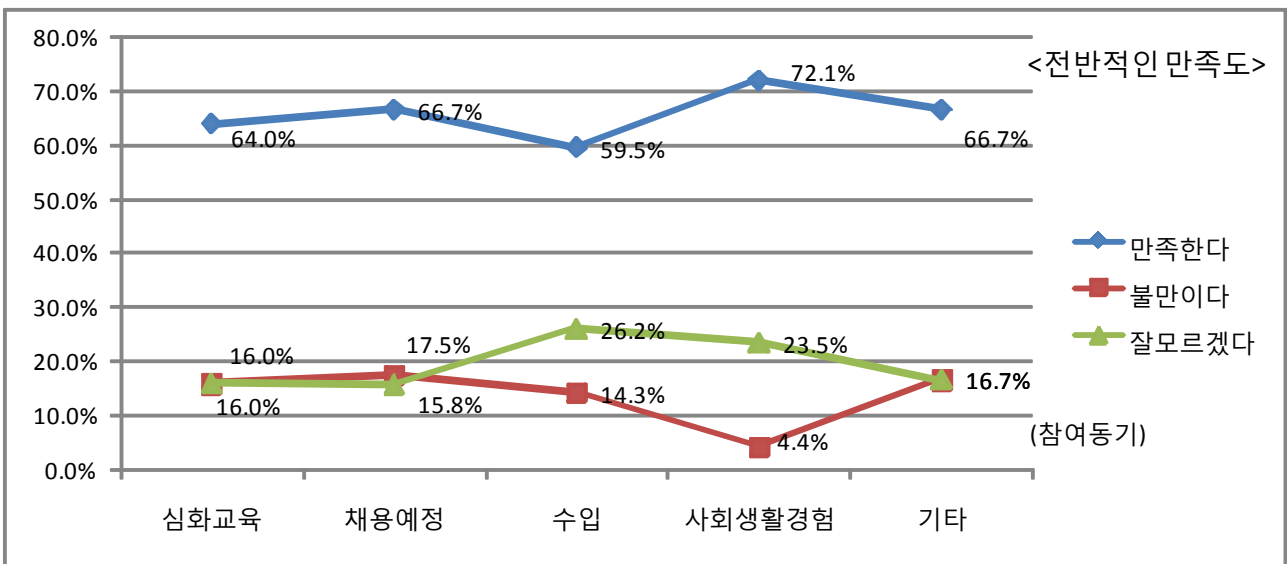
○ 도제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61.3% 수준이었고, 그 중 공동실습장에 대한 만족도는 56.3%로 더 낮게 나왔음.

[그림 15] 도제훈련과정 전반적인 만족도(학교별)



- 전반적인 만족도를 학교별로 파악한 결과 학교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사업단 체계로 진행되는 도제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전반적인 만족도 현황을 학교별 사전 교육(안내) 현황과 비교해보면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여 도제학습에 대하여 사전 교육(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하. 도제학교 지원 동기별 만족도



- 도제학교에 참여하게 된 동기별로 만족도를 살펴보면 심화교육이나 채용예정 등 도제학교의 원 취지와 관련된 만족도는 60% 수준이었고, 수입 및 사회생활 경험 등 부수

적인 취지와 관련된 만족도는 56.3%와 70.1%로 나타났음.

○ 도제학교 참여 동기 중 가장 비율이 높았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14.3%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5. 소결

○ 도제학교 제도가 확대되어가고 있으나 사업체에서는 도제교육과 무관한 청소, 잡일 등을 시키는 등 도제교육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충분한 사전준비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

○ 학생들의 참여 동기는 심화 학습, 채용 예정 등 도제학교의 본 취지보다는 수입, 사회경험 등 부수적인 취지에 욕구가 많아 학생들의 참여 동기 또는 기대부분과 도제학교 운영방향이 부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부에서는 7시간(최대 8시간)으로 제한된 업무시간을 규정보다 초과하는 등 법 위반의 소지도 있었으나 교육현장에서는 면밀하게 파악하기 힘든 구조가 있어 도제학교 공식 교과과정에(외부 1회성 강좌가 아닌) 기초 노동법교육 등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 지속적인 산업현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학생들과의 상담 등을 통해 도제교육 과정에서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활동이 요구됨

○ 산업현장에서의 노동조건과 환경 등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산업현장에 대한 학생, 교사, 교육기관의 정보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필요가 있음

○ 도제학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56%~70%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공동실습장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음. 참여 동기별 만족도를 보면 수입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조사되어 학생들의 기대욕구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음.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머무르고, 사업단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임에도 임금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또 중도 복귀가 제한되어 도제학교보다 ‘아르바이트’를 더 선호하는 경향도 있었음

○ 전체 노동자의 산재비율에 비추어 도제사업장의 재해비율은 20배 높게 조사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구들은 지급되지 않거나 매우 미비한 상태였음. 학생들이 교육의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함

### Ⅲ.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실태 및 문제점

####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문제점

##### 가. 도제반 모집 및 안내

○ 도제반 모집은 1학년 학기말에 이뤄짐. 선발 방식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사례 8. 학교의 경우 1차 ‘교과 성적+출결+학교생활’, 2차 ‘참여 기업체 면접 100%’ 과정을 거쳐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많아 3: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함


2016년 선발 방법-사례 8.

	교과 성적	출 결	학교생활	비 고
1차 전형	원점수의 합	출결 점수 감점	징계 점수 감점	1학년 1,2학기말 전 교과 원 점수에서 출결 및 징계점수를 감점하여 총점 순으로 선발.
2차 전형	참여 기업체 면접 100%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참여 회사 설명회를 갖고 선 지망 후 회사 견학 및 면접으로 최종 25명 선발.
기 타	[동점자 처리] 1차 전형에서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 후 2차 전형 응시 기회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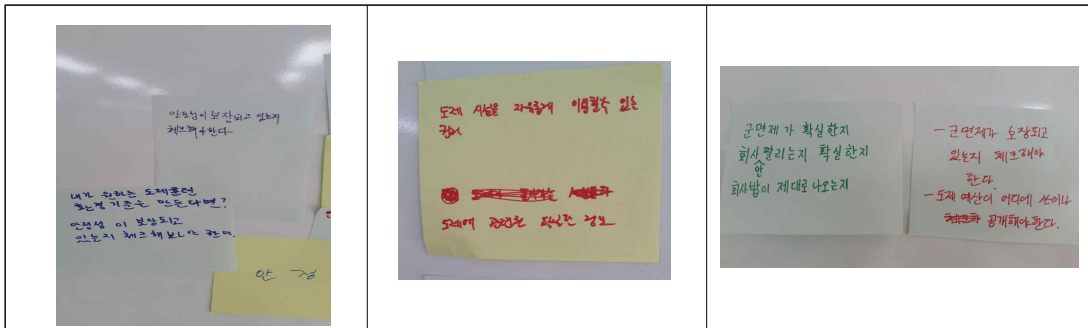
○ 도제반 모집 경쟁률이 높았던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현장역량 배양’, ‘우수기업과 채용 약정’, ‘도제교육 이수 후 NSC기반 자격 취득’ 등 실무 역량을 키워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기대임. 특히 남학생의 경우 ‘병역 혜택, 산업기능 요원 선정시 1순위 대상’에 대한 기대감인 것으로 나타남(홍보 리플렛-사례 1 참고)

○ 그러나 학생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해당 혜택이 확실한 것인지 학교도 기업도 확신을 주지 않아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함. 학생 다수가 홍보내용대로 혜택이 있는 것인지, 기업에서 ‘안 찢리는 게 확실한 지’ 등 도제 전반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알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어 모집할 때 도제학교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안내가 필요함

## 홍보 리플렛-사례 1.

<h3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산학일체형 도제학교</h3> <p><b>기술/기능 명장의 꿈,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미 소질과 적성에 맞는 나만의 관심분야가 있고, 학교 뿐만 아니라 기업 내 팀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경력개발을 시작하고 싶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참여하세요!</li> <li>☑ 도제교육에 참여하면 다음 혜택이 있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제교육을 마치면 바로 채용약정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li> <li>● 기업으로부터 교육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평가를 거쳐 국가자격 취득이 가능해집니다.</li> <li>● 신입기능요원 선정시 우대, 맞춤형기업제도와 같은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li> </ul> <p><b>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서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우면서 효과적으로 실무역량을 기를 수 있어요.</li> <li>☑ 현장에서 일하면서 재미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요.</li> <li>☑ 정부가 인정한 우수기업에 빨리 취업할 수 있어요.</li> <li>☑ 취업 후에도 후진학 제도를 통해 능력개발이 가능해요.</li> </ul>	<h3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5px;">참여 혜택</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학생</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중심 교육으로 조기에 필요 현장역량 배양</li> <li>2. 우수기업과 채용 약정</li> <li>3. 도제교육 이수 후 NCS기반 자격 취득</li> <li>4. 기업현장 교육훈련 수당 지급</li> <li>5. 병역 혜택, 신입기능요원 선정 시 1순위 대상</li> </ol> </li> <li>❖ <b>기업</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훈련 프로그램 개발 지원</li> <li>2. 현장훈련 학습도구 제작 지원</li> <li>3. 현장훈련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련직종별NCS 단가×조정계수 3배×OJT시간×도제교육생수]</li> </ul> </li> <li>4. 도제교육생 훈련지원금 지원(월급여 기준, 월 최대 40만원 차등 지급)</li> <li>5. 기업현장교사 활동수당 지원(연 400~1,600만원 차등 지원)</li> <li>6. HRD담당자 행정수당 지원(연 300만원 지원)</li> </ol> </li> </ul> 
---	--

## 도제학교 참여 학생의 모집 안내 의견



### 나. 노동인권 교육

- 시범 운영하는 학교 전체가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음
-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은 주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교육과 직장에절임.
- 교육 시간은 1회에 2시간을 하는 경우가 다수였음
- 교육 횟수는 사례 3. 사례 8.처럼 1회 실시가 주였으며 교육 시기는 10월에 이뤄진 반면, 사례 5.의 경우 5, 7, 9월 3차례에 걸쳐 3회 교육을 하는 등 학교마다 편차가 존재함
- 사례 8.의 경우 2016년 법정 최저임금을 아는 경우가 24명 중 5명 정도였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다수였음. 간단한 법적 지식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낮아 향후 이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임

도제반 노동인권 교육-사례 3.

도제반 노동인권 교육	교육시행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시행 시기	( 10 )월
	교육시행 횟수	( 1 )회
	교육시행 시간(1회기준)	( 2 )시간
	교육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기준법 <input type="checkbox"/> 산업안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도제반 노동인권 교육-사례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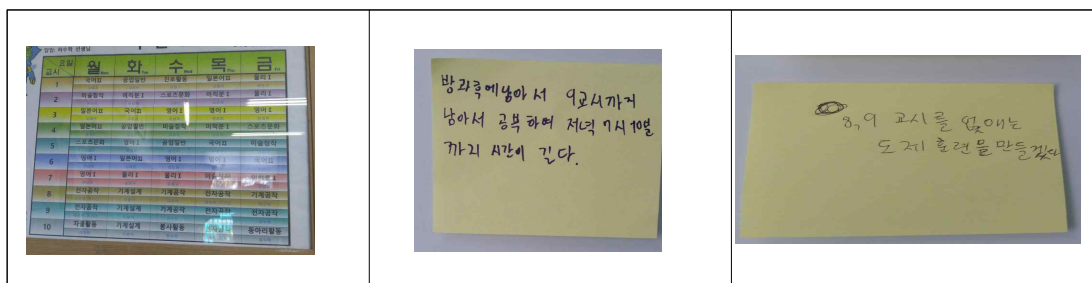
도제반 노동인권 교육	교육시행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시행 시기	( 5.19 )월
	교육시행 횟수	( 3 )회
	교육시행 시간(1회기준)	( 2 )시간
	교육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기준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안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도제반 노동인권 교육-사례 8.

도제반 노동인권 교육	교육시행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교육시행 시기	( 10 )월 ( 10월 4일 )
	교육시행 횟수	( 1 )회
	교육시행 시간(1회기준)	( 2 )시간
	교육내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기준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산업안전 <input type="checkbox"/> 기타 안전교육, 직장예절

다. 방과 후 수업 운영

도제학교 참여 학생의 방과 후 수업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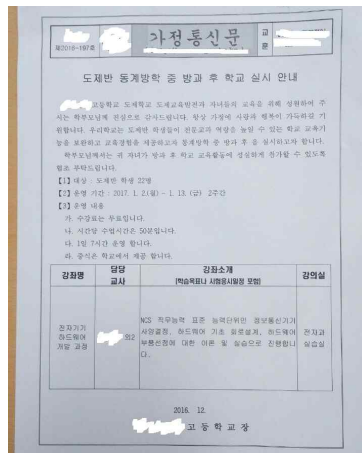


○ 도제 학교 운영 학교에서는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이에 대한

불만 사례가 많았음. 사례 10. 학교의 경우 10교시를 운영하고 있어 하교 시간이 저녁 8시를 넘었음. 방과 후 수업 운영은 구간정시제 운영 특성상 수업 시수를 채우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임

○ 그러나 주중 기업 내 기숙사 생활을 하며 훈련 중 쌓인 피로도가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와 학교로 돌아와 12시간 이상 장시간 수업에 시달리면서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 방학 중 방과 후 안내문



○ 방학 중에도 수업을 보충하기 위해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음. 도제반 전체 학생에 대해 방학 중 하루 7시간 수업을 2주간 운영하는데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학기 중 방과 후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방학 중으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수업선택권과 휴식권을 고려한 대책이 시급함

라. 복교 시 수업선택권

○ 3학년 현장실습의 경우 복귀하면 돌아올 수 있는 교실이 있는 반면 도제반의 경우 학교로 돌아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자신의 반이 없음. 이는 각 학교별 전공별로 한 반씩만 운영하기 때문임. 학교는 복귀자에 대해 일반반으로 전반하는 외에 다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사례 10. 학생들의 경우 돌아오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고 하는 반면 학교에서는 일반반으로 편성을 변경한다고 답함. 이는 복교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인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복귀유형별로는 △기업이 사업을 단순 반납하는 경우, △기업이 사업 운영 중 도

산·휴폐업하는 경우, △학생이 훈련 도중 다쳐서 요양이 필요한 경우(산재 요양), △학생의 입장에서 훈련 과정이 기대에 못 미치거나 적성에 맞지 않는 경우, △전학하는 경우 등이 발생함

○ 기업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어 복귀하는 경우 새로운 기업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훈련과 교육과정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학생이 훈련 도중 다치는 경우 산재 요양 처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함. 산업재해보험법상 현장실습생의 경우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도제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의 신분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음

○ 또한 산재 요양기간이 기업 훈련과정 중에 발생하는 경우와 학교로 돌아와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경우 등 학생의 산재 경중에 따라 수업시수 미달로 이어질 수 있음

○ 따라서 복교생의 수업선택권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복교 유형별 상세 지침을 마련하고 모집 홍보 과정부터 안내할 필요가 있음

복귀 학생 조치 방안-사례 1.

복귀학생 (중도탈락자)	복귀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존재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복귀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이 존재할 시 구체적인 내용	1. 담임교사와 담당 과목 교사의 순회지도 및 기업현장교수의 상담을 통하여 부적응 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2. 질병, 현장기업으로부터 부적응한 학생과 협약 사항에 대한 불이행으로 복교학생은 컴퓨터전자과로 전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제반에 적응을 못하여 탈락한 학생에 대하여 전반을 통하여 적응 기간이 쉽도록 비도제반의 교육과정과 도제반의 교육과정을 NCS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일부교과는 같게 편성한다.

복귀 학생 조치 방안-사례 4.

복귀학생 (중도탈락자)	복귀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존재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복귀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이 존재할 시 구체적인 내용	1학기 기업 OJT훈련 직후 진로변경 희망학생 1명 발생함. 수차례 상담 및 숙려기간 거친 후 10월1일자 비도제반으로 반 변경



복귀 학생 조치 방안-사례 10.

복귀학생 (중도탈락자)	복귀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 존재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복귀학생에 대한 조치 방안이 존재할 시 구체적인 내용	일반반 편성으로 변경.

2. 산업체 운영 실태 및 문제점

가. 산업체 선정과 기업과 학교의 관계 문제

- 담당 교사가 방과 후 혹은 주말에 직접 참여기업을 섭외하러 다니는 등 격무에 시달리고 있음. 이와 같은 형태로 기업이 발굴되다보니 참여기업이 갑의 지위가 되어 학교 교사에 대한 소위 ‘갑질’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음
- 이와 같은 관계에서는 도제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기업과 학교의 협의가 불가능하여 본래 취지대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산업인력관리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를 선정하고 학교에 명단을 제공해 학생들을 연결하는 방향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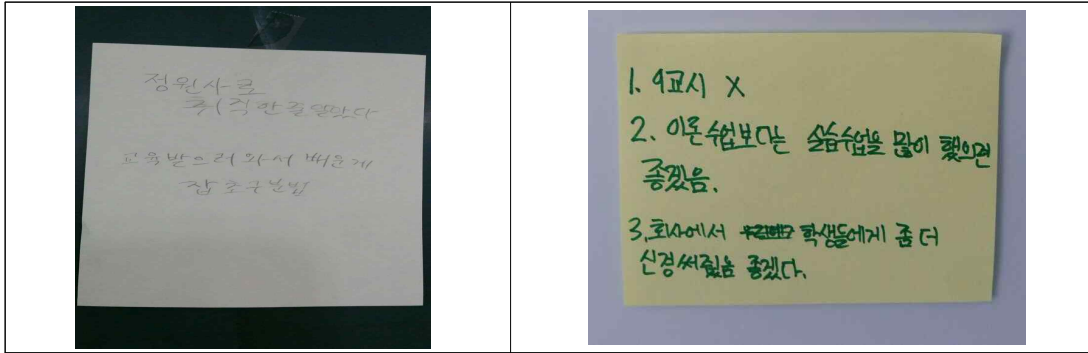
나. 기업 현장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사전 교육 필요

- 기업에 대한 정보와 기업 현장 교육 시작 전 교육에 대한 사전 안내가 없는 경우가 많았음. 산업인력공단이 기업정보에 대해 학생이나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할 것임
- 중간에 기업이 포기한 경우 학생들에게 안내 없이 다른 기업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음. 향후 기업이 변경될 때 기업과 학교 모두 학생들에게 사전 안내하고 향후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다. 전문교과와 교육훈련 내용의 적합성

- 학생들은 기업 현장 교육 과정에서 전문교과를 실습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현실은 이와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음. 도제학교 과정에서 이론수업보다는 실습수업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하였음. 또한 전공과 무관한 풀 뽑기, 개인 심부름 등을 하는 경우도 있어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도제 참여 학생의 교육 내용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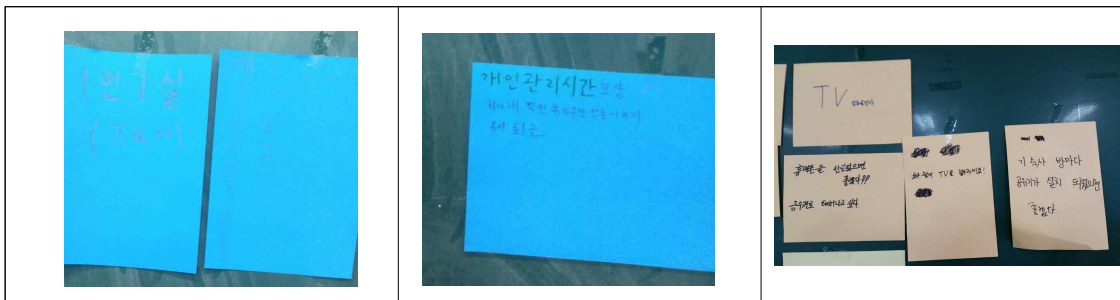


○ 2학년 1학기부터 진행하는 도제학교 특성상 전문교과를 배우지 않은 채 기업 현장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훈련 과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전문교과와 교육훈련의 적합성을 높이기 어려워 보임

라. 기숙사 운영 및 개인 시간

- 사례 10.의 경우 참여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했으며, 다른 학교의 경우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음
-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월요일 출근하면서 입소해서 금요일 퇴근하면서 퇴소하고 있음

도제 참여 학생의 기숙사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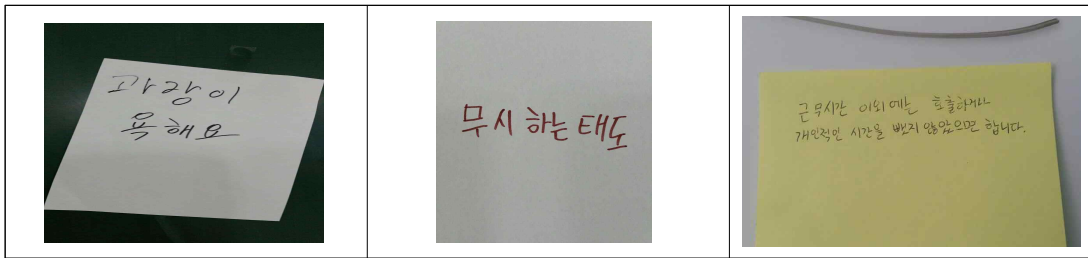


- 직원 중 1인과 학생 3~4명이 기숙사 생활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어 직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로 힘들다고 호소함
- 근무시간외 호출하거나 기숙사에 TV가 없고, 인터넷공유기가 없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점 등 휴식과 사적인 활동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

마.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 등

- 동료 직원에 의한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 등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학생이 많았음
- 궁금한 걸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냐’는 핀잔이나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냐’는 무시하는 태도가 많다고 함. 무조건 반말을 하거나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호출해서 개인 심부름을 시키거나 과외 노동을 시키는 등의 부당함을 호소함

도제 참여 학생들의 기업의 대우에 대한 의견



### 3.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및 문제점

가. 도제교육과 ‘기업현장 교육(OJT) 및 훈련계약서’ 적합성

- 도제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경우 ‘학습근로자’ 혹은 ‘도제교육생’으로 칭하고 있음
- 도제교육 시작 전 ‘기업현장 교육(OJT) 및 훈련계약서’ (훈련계약서)를 작성함. 3학년 현장실습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노동부 고시 ‘현장실습표준협약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현장실습과 달리 훈련계약서를 작성하는 기준과 근거법이 없어 근로기준법에 준해 훈련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음
- 도제교육 과정에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훈련계약서의 적합성을 따진 후 보완이 필요해 보임. 학교와 학생은 근로계약서로 인지하고 있음

나. 훈련계약서 작성 및 배부

- 훈련계약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자신의 훈련조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 훈련계약서 작성 시기 및 반드시 들어갈 내용에 대한 교육 및 안내 등이 필요하며, 반드시 학생에게 배부해야 함

다. 훈련계약서의 기간 문제

- 학교에서 안내하고 있는 도제학교 훈련기간은 2학년~3학년까지 2년임
- 기업과 작성한 훈련계약서는 제1조에서는 졸업일까지, 제5조에서는 2월 28일까지로 하여 같은 훈련계약서에서 다른 기간을 설정하고 있음
- 학교마다 같은 내용으로 작성하고 있어 도제 학교 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함

훈련계약서 작성 사례-교육 기간

구분	훈련계약서 작성 내용
교육 기간	<p><b>제1조(교육(훈련) 기간 및 장소)</b> 교육(훈련) 기간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교육이 실시되는 2016년 3월 2일부터 2018년 2월("을"의 졸업일)까지로 한다.</p>
임금 지급 기간	<p><b>제5조(임금지급 및 복리후생시설의 이용)</b> ① 훈련기업은 도제교육생에게 소정의 임금을 다음과 같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한다. 다만, 훈련기업은 도제교육생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에 비례하여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1. 임금지급기간 : 20 <u>16</u> . <u>3</u> . <u>2</u> . ~ 20 <u>18</u> . <u>2</u> . <u>28</u> .</p> <p>2. 임금지급시기 : 매월 <u>25</u> 일</p> <p>3. 임금지급액 : 월 / <u>300,000</u> 원</p>

라. 훈련시간과 휴식 문제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시간 기준에 따라 훈련시간을 정하고 있음. 1일 8시간/주 40시간이 기준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1일 7시간/주 40시간이 기준임. 훈련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현장 외 훈련에 참여하는 시간’, ‘현장훈련시간 중 이론교육에 참여하는 시간’ 으로 정하고 있음

훈련계약서 작성 사례-훈련시간과 휴식 문제

구분	훈련계약서 작성 내용
훈련 시간 과 휴식	<p><b>제6조(훈련근로시간과 휴식)</b> ① 기업현장교육 및 실습(근로) 시간은 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훈련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장외훈련에 참여하는 시간</li> <li>2. 현장훈련시간 중 이론교육에 참여하는 시간 (정해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 한한다)</li> </ol> <p>② 18세 미만인 도제교육생의 훈련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훈련기업과 도제교육생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p> <p>③ 1일의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훈련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p>

○ 이와 같은 기준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기준에 비해 열악한 조건이라 할 수 있음.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자는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현장실습은 3학년에 이뤄지고 도제학교 기업현장교육은 2학년부터 이뤄지고 있음. 따라서 도제학교 참여 학생의 경우 현장실습생보다 저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시간을 훈련에 참여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2.3.\]](#)

마. 다른 노동관계법 문제

최저임금 준수 여부, 연장노동 및 야간노동 문제,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연차사용시기 지정에 대한 문제, 4대 보험 적용의 문제, 도산 폐업 시 임금체불 문제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할 것임.

바. 기타

○ 같은 학교 학생들 간에 어떤 기업체에서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 임금의 차이가 발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임

○ 훈련 본연의 목적으로 이뤄진다고 하면 훈련수당의 개념이 되어 기업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형평성에 맞게 지급되어야 할 것임. 만일 근로계약에 준해 기업별 지급능력에 따라 지불한다고 할 때 교육훈련 과정으로 볼 수 있을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음

#### IV.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선방안

지금까지 살펴 본 실태와 문제점은 ‘지위·노동조건 등 훈련계약에 대한 불명확함’, ‘노동인권 및 학생선택권 보장에 대한 미흡한 인식’, ‘현장교육훈련 질 관리 부족’, ‘불충분한 행정적·제도적 뒷받침’ 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필요함

##### 1. ‘지위·노동조건 등 훈련계약에 대한 불명확함’ 개선방안

도제학교 학생(학습근로자)을 모집할 때 내세우는 군 면제, 졸업 후 채용 등과 같은 조건은 학생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판단요소인데, 이러한 사항이 보장되고 있는 지에 대해 기업, 학교, 학생 모두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함. 또한 훈련계약서 기재 내용도 실제 훈련·노동조건을 반영하기보다 양식을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있음

고용·노동관계의 불명확함으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불명확함을 반드시 해소할 필요가 있음

가. 참여기업 확보업무, 학교 →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이관

○ 현재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사업은 교육부·고용노동부가 사업선정 공고를 내면 특성화고와 기업이 사업단을 구성해 거점학교형 등의 운영유형을 정하여 신청한 후 선정되면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방식임

○ 이 과정에서 도제학교 참여기업 확보업무(심지어 참여기업이 담당해야 할 행정업무까지)를 학교가 맡으면서 기업에 대해 ‘을’의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다보니 제도의 취지, 노동법상 의무 등을 학교가 기업에 쉽게 요구하거나 안내할 수 없는 구조에서

고용·노동관계의 불명확함이 비롯된 부분이 큼

○ 도제학교 참여기업 확보를 학교가 맡는 지금의 방식에서는 학교가 참여 실적 및 차기 연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졸업 후 채용 약정, 적절한 훈련계약 체결, 훈련기간 중 문제 발생 시 개입 등에서 참여기업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거나 참여기업의 의무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할 여지가 많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서 기업체를 모집·선정하고 학교에 명단을 제공해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참여기업 확보업무를 학교에서 지원금 제공자이자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로 이관한다면, 도제교육 사업과 훈련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가 참여기업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정보에 근거해 훈련계약이 체결되고 현장훈련과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임. 참여기업의 범위도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고, 직업교육훈련 주체인 학교 또한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게 될 것임

나. 표준훈련계약서 개선 및 노동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 현재 일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제학교 훈련계약서는 도제학교뿐만 아니라 여타 일학습병행제 관련 직업훈련계약에도 사용되는 양식으로, 훈련계약서에 훈련기간, 시급(월급) 등에 빈칸을 채우고 나면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도제학교의 특성 및 개별 사업장 학습근로자의 노동·훈련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다보니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도제학교의 특수성 및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훈련조건에 대한 불명확함이 노사 상호간에 존재함.

○ 따라서 사업장 및 학습근로자 양자 모두 명확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훈련계약서 양식을 도제학교 특수성 및 개별 사업장 노동·훈련조건에 맞게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도제학교 운영방식 및 노동·훈련조건에 대해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아직 생소한 도제학교 운영방식 및 학습근로자의 지위에 대해 노사 모두 명확하게 인지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 기존 훈련계약서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예시: 학습근로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적용 확인, 도제학교 운영방식(구간정시제 운영과정 등), 현장교육훈련시 출근일, 노동·훈련시간 및 휴게시간, 훈련시간의

제한, 야간·휴일훈련 금지, 임금산정기간, 연차휴가사용 방법, 도제교육을 중단할 수 있는 학습근로자의 권리, 기숙사 이용시 기숙사 규정의 확인,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 등

○ 또한 같은 교실(동일 직종 교육·훈련) 안에서 임금차이의 존재, 상당수 학생의 기숙사 거주, 연차휴가 사용, 사회보험 자격취득여부 등 혼란 내지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이 있으므로 도제학교 참여 학생들이 최대한 쾌적한 조건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건 가이드라인을 교육부, 고용노동부에서 공동으로 마련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중앙부처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 사안에 대해 교육청이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 2. ‘노동인권 및 학생선택권 보장에 대한 미흡한 인식’ 개선방안

학생이 풀타임 노동시장에 첫 진입하면 현장이 낯설 수밖에 없으며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반면에 일부 사업장에서는 나이가 어리고 교육생 처지에 있는 학생에 대해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2014년 대기업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현장실습생이 자살하고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사례가 있듯이, 비인권적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학생이 도제학교 참여기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거나 훈련(도제학교)에 더 이상 참여하기를 원치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이 없으며, 대안이 없음으로 인해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도제학교 효과도 떨어뜨릴 수 있음

### 가. 학생·교사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상시 상담통로 마련

○ 현장교육에 나가기 전에 모든 학교에서 노동법·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 필요한 내용을 다 담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임. 학생이 현장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안전하게 일을 하고 배울 수 있으려면, 현재 노동인권교육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즉, 노동법상 권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힘, 물음을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노동인권으로 내용을 확대하고 각 직종에 적합한 노동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노동교육이 이루어지려면 도제학교 일정에 정기적인 노동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병행 될 필요가 있음

○ 한편 노동법 교육을 받았더라도 현장에서 상황에 대한 이해나 문제 인식 및 대응이 쉽지 않음. 학생이 현장훈련 도중 궁금함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상담할 수 있는 상시 통로가 필요함(노동청 등 상담할 곳은 많이 있으나 이러한 데가 활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으므로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편안한 접근이 가능한 상담통로를 만들어야 함)

나. 참여기업 대상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및 노동인권교육 실시

○ 현재 참여기업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양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음. 이와 별개로 참여기업 대표자, 관리자, 훈련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욕설, 무시 등의 학생에 대한 비인격적인 언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개별기업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이 당장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심지어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른 기업으로 가더라도, 한 사람에 대한 직업훈련이 전국적 차원에서는 인적자본 축적으로 이어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직업교육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교육의 실시가 필요함

다. 복귀학생 교육과정 마련

○ 도제학교가 완벽할 수 없고 모든 학생들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만두기를 원하는 학생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음(또한 사업장이 도산·폐업하여 학생이 복귀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임). 그런데 복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이나 대안이 없다면, 학교는 학생 입장에서 학생을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어떡하든 학생을 설득해 다시 현장으로 돌려보내려고 할 것임<sup>1)</sup>

○ 복귀학생의 존재는 도제학교 운영상 회피하거나 감추어야 할 사안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임을 반영하여 도제학교 복귀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과정이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제도의 미비로 인해 개별 학생의 요구, 희망, 꿈, 다른 경험을 할 기회가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임

---

1) 독일의 경우, 산업체 훈련생의 권리로 '훈련 목적 이외의 노동을 거부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최수정 등,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p. 32).

라. 진로·취업탐색 기회의 충분한 보장과 이를 위한 정보·경험 제공

○ 학생들이 충분한 진로·취업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 전에 해당 직업의 경력개발 경로 등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 더불어 참여 회사 정보도 사전에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한 직종의 여러 사업장을 미리 둘러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필요가 있음(도제학교 참여기업 박람회 등)

### 3. ‘현장교육훈련 질 관리 미흡’ 개선방안

일부 사업장에서 직무관련성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도제학교 도입 취지 및 성공여부는 현장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데 달려 있고 이 점이 조기 취업과 도제학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임

단순한 취업(채용) 지원과 달리 도제학교는 기업에 대해 훈련비, 학생 훈련지원금 외에도 교육프로그램개발, 기업현장교사 및 HRD 담당자 수당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현장교육훈련의 질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가. 기관 간 현장지도 점검상황 및 결과 공유

○ 현재 도제학교 사후관리 현장지도 방안으로 학교, 도제교육센터, 교육청, 지방고용노동관서 관계자가 정기적으로 기업 현장교육을 점검·지도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학교가 ‘도제교육센터 및 기업현장 실습교육 참여 학생 지도’ 를, 도제교육센터·산업인력공단이 ‘기업현장 실습교육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을, 교육청이 ‘학교 및 도제교육센터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 을, 지방노동관서가 ‘교육훈련 환경의 안전성,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점검’ 을 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고 있음<sup>2)</sup>

○ 이 중에서 ‘기업 현장실습교육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및 ‘교육훈련 환경의 안전성, 노동관계법령 준수 등 점검’ 이 기업 현장교육의 실태를 직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인데, 실제 도제교육센터·산업인력공단과 지방노동관서가 현장점검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학교, 교육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기관 간 현장지도 점검 진행상황과 점검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며, 점검사항 등 점검 방법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노동부·교육부, 2016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 선정 공고 등.

나. 기업 현장교육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더 나아가 기관 간 점검상황 및 결과 공유에 그치지 말고 기업 현장교육 모니터링을 위해 학교-교육청-노동청-산업인력공단이 공동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개별기업의 현장교육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봄

#### 4. ‘불충분한 행정적·제도적 뒷받침’ 개선방안

가. 도제학교에 적합한 수업시수 개편

○ 구간정시제로 도제학교를 운영하는 경우,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 방과 후 수업을 9~11교시까지 진행하여 학생이나 교사 모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음. 도제학교에 적합하게 수업시수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도제학교 기업 현장교육 실시 시기를 1학년 2학기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데, 수업시수나 현장교육시간이 올해와 달라지기 때문에 교과과정 이수에 관한 일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sup>3)</sup>

나. 법적 근거 등의 문제 개선

○ 도제학교는 고용노동부 고시인 ‘일학습병행제 운영 및 평가규정’, ‘일학습병행제 세부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외에 현장실습을 규율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또한 도제학교 학습근로자에게 준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엄밀히 따지면 현장실습생과 학습근로자는 법적 지위에서 차이가 있어 도제학교 학습근로자 적용 사항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

○ 이와 관련 현재 정부에서 발의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일학습병행제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은 제19대 국회 당시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정부가 일부 문구 수정을 거쳐 제20대 국회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발의한 것임. 동 법안은 제19대 국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특성화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생과 같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의

3) 2017. 1. 10. 개정·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고등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교과를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기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등으로 확대하였음. 교육청이 도제학교를 실시하는 특성화고 등의 교과편성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함.

지적이 있어 계속 심사하기로 한 바 있었음

○ 일학습병행제 법안은 특성화고 도제학교뿐만 아니라 제반 일학습병행 직업교육훈련에 적용되는 것으로, 현재 특성화고 현장실습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안대로 일학습병행제 법안이 제정될 경우 현장실습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지금까지 살펴 본 특성화고 도제학교 실태와 개선방안 등 특성화고의 특수성을 반영해 보완 제정해야 함<sup>4)5)</sup>

\* 가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상 특성화고 현장실습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가능)으로 되어 있지만, 일학습병행법안은 미성년자인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시간을 1일 7시간, 1주 40시간(당사자 합의로 1일 1시간, 1주 6시간 한도로 연장가능)으로 하고 있어 양자간 차이가 있는데 일학습병행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특성화고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도제학교 1학년 학습근로자의 노동·훈련시간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음.

다. 기업-학교-정부기관간 소통·협의체계 구축

○ 도제학교는 단순한 취업알선이 아니고 기업-학교-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직업교육훈련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교육에 참여하는 각 주체가 정기적으로 소통·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소통·협의구조는 민원 수렴을 위한 관례적 간담회가 아니라 학생을 위한 도제학교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주제로 하는 소통·협의구조가 되어야 함(이를 위해서는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업종별 사용자협의체 구성도 촉진시킬 필요가 있음)

나. ‘모집(홍보)에서 졸업 후 채용’ 까지 교사용 도제학교 운영매뉴얼 마련

○ 학교에서 도제반 학생 모집을 위해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불확실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애매모호한 실무상 문제 및 임금체불·산업재해·사업장 폐쇄 등 이례적 사안 처리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도 많았음

4) 특성화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비롯한 기존 일학습병행제 사업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에 대해서는 ‘강세욱, 일학습병행제 성과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2016. 9.’ 와 ‘감사원, 감사보고서-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운영실태, 2016. 10, pp. 71~81.’ 참조.

5) 한편 도제학교 예산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고(2017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350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50억원 등 총 600억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 있음. 이중 고용보험기금은 주로 사업주 및 노동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노사 반반씩 납부하는 실업급여 부담금 1.3%, 사업주만 추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 0.25~0.85%)로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주목적이어야 하지만, 정부 일반회계 등으로 편성해야할 예산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편법으로 동원해 지적된 사례가 있음(중앙일보, 2014. 3. 10, ‘정부, 고용보험기금 곳감 빼먹듯 전용… 곳간 빈 실업급여’, 한겨레, 2014. 11. 20, ‘고용보험기금은 정부 쌈짓돈?’, 연합뉴스, 2016. 9. 26, ‘육아휴직 급증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재정 빨간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목적에 포함되나 그 비중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실업급여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등을 통한 도제학교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도제학교 시행이 아직 초기이고 이해가 부족한 상태인 만큼 지금까지 파악된 실태를 반영해 모집(홍보)에서 졸업 후 채용까지 교사가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도제학교 운영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5.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개선방안

### 가. 노동안전보건기준 관리·감독 강화

- 앞의 실태조사 결과, 도제학교 훈련 도중 본인 또는 친구가 산업재해를 경험하거나 본 경우가 10.0%에 이르고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음을 느꼈다’고 답한 경우도 65.8%에 달했음. 반면 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안전장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30.4%에 불과했음(30.4% 중에는 목장갑, 작업복을 안전장비로 표시한 경우가 다수였음)
- 학교에서 노동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개선방안과 별개로 각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나.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방안 마련

- 산업재해로 휴업을 하게 되면 도제학교 현장교육훈련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이수 및 졸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하여 학생측에서 오히려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기피할 수 있음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를 은폐하지 않고 학생이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및 휴업에 대한 처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 도제학교 표준 기숙사규칙 마련

- 적지 않은 학생이 현장교육 훈련기간 동안 기숙사에 머물고 있고, 기존 사업장 직원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 상급자의 감시와 통제로 힘들다는 호소를 토로하기도 함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해야 하므로, 도제학교 학생인권을 위해 현장 교육훈련 시 기숙사에 거주하게 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기숙사규칙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한 도제학교 표준 기숙사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부처 · 기관별 개선방안 담당 제안표 〉

문제점	개선방안	교육부	교육청	학 교	노동부	노동청	산업인력 관리공단
지위·노동조건 등 훈련계약에 대한 불명확함	참여기업 확보업무, 학교 → 고용노동부 이관	○			○		○
	표준훈련계약서 및 노동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			○		○
노동인권 및 학생선택권 보장에 대한 미흡한 인식	학생·교사 노동인권교육 확대 및 상담통로 마련		○	○		○	
	참여기업 대상 사회적 책임 및 노동인권교육				○		○
	복귀학생 교육과정 마련	○	○	○			
	진로·취업탐색 기회 보장과 정보·경험 제공		○	○			
현장교육훈련 질 관리 미흡	기관간 현장지도 점검상황 및 결과 공유		○	○		○	○
	기업 현장교육 합동모니터링단 구성	○			○		
불충분한 행정적·제도 적 뒷받침	도제학교에 적합한 수업시수 개편	○	○	○			
	법적 근거 등의 문제 개선	○			○		
	기업-학교-정부기관간 소통·협의체계 구축		○	○		○	○
	교사용 도제학교 운영매뉴얼 마련	○	○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노동안전보건기준 관리·감독 강화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방안 마련	○			○		
	표준 기숙사 규칙 마련	○			○		

## V. 총괄결론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우리나라의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스위스의 산업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의 강점을 접목한 새로운 직업교육모델로, 학생의 조기 취업·기업의 우수 인력 조기 확보·국가의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고용률 제고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홍보되며 2015년부터 매년 확대 운영되고 있음
- 현장실습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일경험을 시작하고, 장기간 기업현장에서 노동을 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제도는 현장학습보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호 필요성이 더욱 높음
- 서울시 관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도제학교 제도와 자신의 근로조건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도제교육과 기업현장 OJT의 낮은 관련성, 도제교육과 무관한 작업 수행, 초과근무 관련 법 위반과 산업안전의 미비 등 우려지점이 확인되었음

### 1. 도제학교 운영상의 문제점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제도의 취지에 비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현장 운영 체계 정비가 미비한 채로 학교와 일선 교사, 최종적으로는 학생의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
- 도입 초기 도제학교 제도 자체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채 확장 운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 사업체 선정과 운영을 일선 학교의 책임으로 맡겨둠에 따라 학교 교사는 참여기업 확보와 운영을 위해 격무에 시달리는 한 편, 문제가 발생하여도 업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기 어려워 학생 보호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구간정시제 운영에 따른 수업시수 부족 문제도 방과후 수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학교와 학생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음
- 복교학생에 대한 조치가 준비되지 않아 학생의 수업선택권 침해가 우려됨
- 그 외에도 기업체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로 인한 기업변경과 폐업, 전문교과와 적합

성이 낮은 교육훈련, 열악한 기숙사 환경과 직원으로부터의 비인격적 대우 등의 문제도 확인할 수 있었음

## 2. 학생 노동인권의 문제점

-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동관계법 위반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지점이 확인됨
- 훈련계약서가 양식을 채우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학생들의 실제 훈련조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부되지 않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등 훈련조건이 제대로 안내되지 못함
-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훈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3학년 현장실습생보다 저학년인 2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도제교육에서 장시간 근무를 전제하는 사실적·법적 모순 상태 발생
- 연장·야간 노동, 연차휴가 발생과 사용, 도산 폐업 시 임금체불, 기업 간 임금격차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기업체의 폐업으로 인한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임금채권보장법과는 별도로 도제제도 내에 자체적인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개선방안

### 가. 고용노동부의 참여기업 확보업무 책임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제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지위·노동조건 등 훈련계약의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 확보업무를 일선학교가 아닌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것이 중요함
- 이는 도제교육 사업과 훈련계약 내용에 대해 참여기업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에 기초한 훈련계약 체결과 훈련과정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참여기업 확대와 안정적 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음
- 학교가 교육과 학생보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도 필요함

### 나. 표준훈련계약서 및 노동조건 가이드라인 마련



○ 도제학교 학습근로자의 실제 노동·훈련조건을 반영한 표준훈련계약서와 노동조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함

#### 다. 노동인권교육 확대와 상담창구 운영

○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별로 불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정기화하고,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지도교사와 참여기업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적이고 접근성 높은 상담창구 운영이 필요함

○ 노동인권교육의 내용은 노동법상 권리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생각과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각 직종에 적합한 노동안전보건교육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라. 교육과정 개선 및 정보제공

학생선택권 보장을 위해 복귀학생을 위한 교육과정과 대안마련이 필요하며, 학생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진로·취업 탐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험의 기회를 줄 수 있는 조치(도제학교 참여기업 박람회 등)가 필요함

#### 마.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지도 점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성공여부는 현장교육훈련의 질 관리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 기관별로 분화되어 있는 지도 점검 역할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 점검상황과 결과의 기관 간 공유,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점검방법의 지속적 개선 및 합동 점검체계 구성 등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질 관리 체계 구성이 필요함

#### 바. 미흡한 제도 및 기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보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직업교육훈련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합한 수업시수 개편, 불분명한 적용기준 정비, 기업·학교·정부기관 간 소통·협의 체계 구축 및 운영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시급함

#### 사.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개선방안

○ 전체 노동자의 산재비율(0.5%)에 비해 도제학교의 산재비율(10%)은 20배 높게 확인

되었으나, 안전장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30.4%(다수는 목장갑, 작업복 정도)에 불과하여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함

○ 산재은폐가 발생하기 쉬운 현행 도제학교 구조를 개선하여 산재 발생시 학생이 적절한 보상과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처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 기숙사 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도제학교 표준 기숙사규칙 마련이 필요함